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인 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」는 제정 목적을 “올바른 국가관의 확립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“올바른 국가관의 확립”을 조례 제정의 목적에 어울리도록 “국어 발전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상위법인 「국어기본법」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

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교육감이 해당 책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